멜라민 과자·커피 크림 유통 실태와 위험성

학교 앞 구멍가게·문구점 '사각지대'

어린이들 장기간 먹으면 신장결석 위험

시중유통 '카스타드' 등 상당수 회수안돼

식약청이 '멜라민 공포'가 과자·커피류 등 식품 전반으로 확산되자 지난 26일 중국산 유제품 함유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제품이 판매 중이거나 수거되지 않고 있어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백화점, 대형할인점의 경우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어린이들이 주고객인 학교 앞 문구점, 지역 영세점포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이 아직 진열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실태=28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멜라민 검출제품은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밀크러스크 등 과자류와 커피크림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까지 총 4종이다. 식약청은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 중 95.7%를 출하 전 압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제품 수입량이 2만4천615㎏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이미 1천39㎏은 팔려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멜라민이 검출된 홍콩산 '밀크 러스크' 제품 1천856㎏은 대부분 소비됐다.

식약청은 전국 시·도에 통보해 개별 업체에 관련제품의 유통·판매금지 조치가 전달되도록 했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학교 앞 구멍가게나 문구점의 경우 관련 기관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전남도 조차도 카스타드 제품을 취급하는 가게는 물론 이 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수량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가 28일 광주 5개 구청위생 공무원들과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시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제품 수거 조치가 이뤄졌으나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학교 앞 문방구나 소규모 가게 등에서는 카스타드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곳도 상당수였다.

◇멜라민 얼마나 위험한가=유럽 식품안전청의 장기 섭취허용량(TDI)을 적용할 경우 체중 20kg 어린이가 미사랑 코코넛 하루 13개 이상을 장기간 먹으면 신장결석 등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는 멜라민의 TDI를 0.5mg/kg bw/day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0.63mg/kg bw/day로 설정하고 있다.

미사랑 카스타드 1개(5.5g, 약 6.5㎝×3.5㎝)당 멜라민이 0.75mg이 들어 있으므로 유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체중 20kg의 어린이가 하루 13개를 장기간 먹으면 신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미사랑 카스타드 소용량 1박스에는 8개가 들어 있다.

커피크림의 경우에는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 체중 60kg 성인의 경우 매일 30mg 이상의 멜라민을 장기간 먹을 경우 신장기능에 이상을 줄 수 있다. 문제의 커피크림에서 검출된 멜라민의 양이 1.5ppm이고 1회용 커피믹스 1개에 함유된 커피크림의 양을 약 5g으로 볼 때 하루 4천 잔 이상을 먹어야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동서신의학병원 신장내과 이상호 교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멜라민을 섭취하게 되면 이들 물질은 신장을 통해 결정의 형태로 배설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몸에 생긴 멜라민이 체내 물질과 반응해 쉽게 결석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위해식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식품 집단 소송제와 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이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발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정합동 식품안전 +7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례 이상 위해식품 판매 관련업종 평생 종사 못한다"

식품안전대책, 내용 강화 … 실효성 '미지수'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멜라민 식품 파동과 관련해 또 한 번의 식품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내용 자체는 이전보다 확실히 강화됐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온 위해식품 문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듯하다.

특히 식품업계의 반대로 7월 발표된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제외됐던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의 원산지와 OEM 여부를 상표의 절반 크기로 상표 옆에 표기토록 한 점은 과거보다 한층 진일보한 안전책이라는 평가다.

식품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두 차례 이상 위해식품을 생산·유통·판매할 경우 관련 업종에 평생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2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위해식품을 팔아 챙긴 부당이익도 최대 10배까지 과징해 환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부의 실천 의지와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식품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책을 어떻게 입법화하고 현실에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대책이 실현되려면 식품업계의 반대를 넘어서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식품집단소송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법무부와 식품업계의 반대로 결국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지난 7월 정부가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내놓을 때도 식품집단소송제는 제외된 바 있다.

이처럼 민감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을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멜라민 파동의 직격탄을 맞은 식품업계가 현재 숨을 죽이고 있긴 하지만 파문이 한풀 꺾인 뒤 다시 대대적인 반대 로비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아서다.

OEM 수입식품과 반가공 수입식품의 원산지를 상표의 절반 크기로 전면(前面)에 표시토록 한 점에 대해서도 식품업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식품업체들의 중국 현지 생산 의존도나 중국산 원료 수입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지만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향후 매출 격감과 수익성 악화, 집단소송 남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 남발 탓에 기업경영에 타격을 입고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식품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에는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소송 기준 자체를 '수십명 이상이 위해식품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때'로 제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연합뉴스

■ 정부 中 콩단백도 검사

만두·두부·어묵에서도? 멜라민 파문 확산 조짐

정부가 28일 중국 이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유제품 함유식품은 물론 만두, 두부 등 가공식품의 단백질 공급원인 중국산 콩단백질까지 멜라민 검사를 확대키로 해 멜라닌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만일 콩단백질에서도 통관검사를 통해 멜라민이 검출된다면 광주·전남 건강식품, 두부, 만두 등 지역 식품산업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보건당국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는 123개 품목의 명단을 공개한 지 불과 이틀만에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 가운데서도 멜라민이 검출될 수 있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혹시 선진국 제품에서도=정부는 이날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됐더라도 유제품이 함유된 식품이라면 통관 과정에서 멜라민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3국에서 중국산 분유나 카세인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에 멜라민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커피크림의 경우 함량이 2~3%에 불과한 식품첨가물인 카제인으로 인해 멜라민이 나왔다. 일본에서 중국산 카제인을 수입해서 만든 과자라면 멜라민이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관 검사에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돼 막대한 규모의 검사가 진행된다면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식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

◇건강식품, 어묵, 만두도 안심할 수 없다=정부가 이번에 검사를 추가한 부분은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분리대두단백이다.

분리대두단백은 각종 가공식품에 단백질공급원으로 널리 이용되는 식품원료로 어묵이나 만두 같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과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도 이용된다. 분리대두단백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된다면 지금까지의 유가공 제품의 멜라민 파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식품 공황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땜질식 대처, 소비자 혼란·불신 초래=식약청은 26일 유제품을 함유한 중국산 식품 가운데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는 123개 품목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불과 이틀 만인 28일 말을 바꿨다. 이미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품목 가운데서도 멜라민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식약청은 업체들에게 이미 적합 판정이 내려진 업체들에게도 당분간 유통·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는 지적이다.

시민 김모씨(여·42·광주시 북구 두암동)는 "식품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마저 혼란스러운 상황에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떤 식품을 먹어야 할 지 막막하다"며 "식탄안전이 위협받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부의 땜질식 대처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식품위생사범 징역형 0.5%그쳐"

민주당 우윤근 의원 자료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죄에 비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이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은 ▲2006년 1천318명 ▲2007년 1천384명 ▲2008년 1~6월 762명이었다.

그러나 전체 3천464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20명으로 0.5%에 그쳤고 벌금형이 2천466명(7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집행유예는 4.4%, 선고유예와 무죄는 각각 2.9%와 1.4%였다.

10명 중 7명꼴로 벌금형만 받고 풀려 나왔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1천명 가운데 5명에 그친 셈이다. 이는 특별법상 타 범죄에 대한 처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같은 기간 특별법 위반 사범의 징역형 비율은 평균 12.8%, 집행유예 비율은 평균 30.9%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하십시오
02)397-3000 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